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환 경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오염방지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6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6.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 57.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58.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59.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60.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2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28.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제40조에 제17호의4부터 제17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의4.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17의5.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17의6.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제51조제2항 후단 중 “44명을”을 “45명을”로 한다.

제52조제2항 후단 중 “26명을”을 “30명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15”를 “630”로 하고, 일반직 계 “609”을 “6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5”를 “590”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87”를 각각 “1,840”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657”를 “1,81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하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단서·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본문·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 가목·서목·커목·허목·노목에서 로목까지·보목·코목·토목·호목,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의 실무위원”를 “9명의 실무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④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의 실무위원”를 “10명의 실무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의 실무위원”를 “10명의 실무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⑥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의 실무위원”를 “8명의 실무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 ⑧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2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4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2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⑯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
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제1호 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를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u>환경오염</u> <u>방지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u> <u>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제3조(직무) ----- ----- <u>환경오염</u> <u>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u> <u>발 및 하천</u> -----.
제10조(물관리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0조(물관리정책실)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1. ~ 55. (현행과 같음) 56. <u>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u> <u>한 사항의 조정 · 관리</u> 57. <u>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 수</u> <u>립 등에 관한 사항</u> 58. <u>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u> <u>· 이수(利水) · 환경 · 문화 ·</u> <u>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u> <u>에 관한 사항</u> 59. <u>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u> <u>양성 등에 관한 사항</u> 60. <u>하천의 운용 및 유지 · 관리</u> <u>에 관한 사항</u> 61. <u>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u> <u>비에 관한 사항</u>
제35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제35조(직무) -----

사무를 관장한다.

1. ~ 2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1. ~ 17의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8. ~ 21. (생략)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

1. ~ 25. (현행과 같음)

26.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28.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제40조(직무) -----

-----.

-----.

1. ~ 17의3. (현행과 같음)

17의4.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17의5.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17의6.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18. ~ 21. (현행과 같음)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하

----- 45명 -----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명 -----

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	·	·	·	·
			·	·	·	·	·
일	반	직	계	·	·	·	·
			·	·	·	·	·
			·	·	·	·	·
3	급	또는	4	급	이하	·	·
			·	·	·	·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87</u>	• <u>1,840</u>	+153
일반직 계	<u>1,687</u>	<u>1,840</u>	+15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57</u>	<u>1,810</u>	+15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